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26
----------	-------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한정애 · 박홍근 · 이동주
강선우 · 윤미향 · 위성곤
고용진 · 용혜인 · 권칠승
김영주 · 전해철 · 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로 수만년 동안 사람과 살아오며 반려동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오늘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임

과 방치로 인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이 있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등 그간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개농장”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식용개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 등 민간은 민간활동을 통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장주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 식용의 종식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용개농장 분포 현황
2. 식용개농장 종사자 현황
3. 식용개농장의 개 사육두수 및 사육환경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용개농장의 사육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농장주 또는 식용개농장 종사자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폐업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농장주가 해당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처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의 이관

2. 「동물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의 이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용개농장의 폐쇄 시기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잔존가액 및 시설철거비

2.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처분

3. 그 밖에 폐업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의 폐쇄와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용개농장의 사육시설이나 사

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업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하려는 업종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농장주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폐업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반환 기준,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유권 제한 등)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개를 격리하고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3조 및 제16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